

#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1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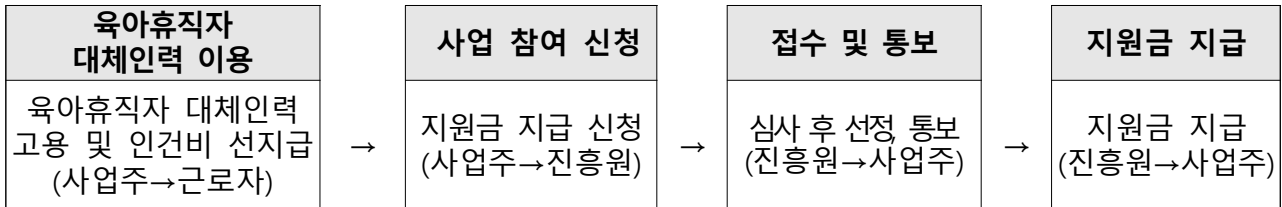
- (사업명)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신청기간) 2026. 1. 30.(금) ~ 10. 30.(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25명 내외
- (지급방법)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소상공인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육아휴직 대상: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li></ul></li><li>○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li><li>※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li><li>※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li></ul></li><li>○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li><li>○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li><li>○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li></ul>
근로자 (대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li><li>○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li><li>○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li></ul>

## 2

## 지원절차 및 지원금 지급

### □ 지원절차



※ 진행절차 예시 : 1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2월 13일 (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2월 말 (진흥원→사업주)

###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일괄 제출
- 지원금은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접수 통보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 3

##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30. ~ 10. 30. 18:0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mailto:post@djbea.or.kr))
-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 신청접수

- E-mail) [post@djbea.or.kr](mailto:post@djbea.or.kr)
-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8)

## □ 신청서류

항 목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①체크리스트 ②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li> <li>• 개인 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li> </ul>
	육아휴직 증빙자료 ④육아휴직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휴 사업주) 임신·출산 증명, 가족관 계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li> <li>• (육휴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li> </ul>
	대체인력 증빙자료 ⑤대체인력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통장내역, 이체내역 등)</li> </ul>
	통장사본 ⑥ KB국민은행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b>KB국민은행</b> 통장으로 지급</li> <li>•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사업자)명의 통장 <u>신규 발급</u> 받아야함</li> </ul>
	소상공인 여부확인 ⑦소상공인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a href="http://sminfo.mss.go.kr">http://sminfo.mss.go.kr</a> 발급</li> </ul>
	거 주 지 ⑧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u>계속 거주</u></li> </ul>
	사 업 장 소 재 지 ⑨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사업자등록증 <u>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u>)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li> </ul>
세금체납 여부확인 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급건</li> <li>•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li> </ul>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

- 본 사업은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금은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
  - ※ KB국민은행 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신규 발급 필요
- 지원금은 선정된 사업주에게 사업주 명의 통장 또는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사업으로,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건의 접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 신청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 후 재접수 시 접수 순번은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오지급·과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 작성 내용의 부정확 또는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

## 서식1 체크리스트

###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체크리스트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요건 및 신청 요건 항목 모두 '예' 해당 시 신청 가능 대상자이며 세부적으로 자세한 소상공인 요건 등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요건 및 신청 요건	예	아니요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소상공인 인가요?		
2.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 정상 영업 중 인가요?		
3.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참조)이하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4.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및 KB 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까?		
5.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나요?		
6.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는 아니신가요?		
7. 예산 내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되는 것을 확인 하셨나요?		

<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목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	확인
1.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서식1]	제출
2.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대표자) [서식3]	
4. 육아휴직 증빙서류 / 대체인력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서식4] ※ 급여 이체확인증 등 함께 첨부(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서 제출 / 간이 영수증 불가)	
5. KB국민은행 통장사본(필수) : 사업주에게 지급 예정으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통장	
6.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 <a href="http://sminfo.mss.go.kr">http://sminfo.mss.go.kr</a> ) 발급	
7.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개월 이내 발급)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장, 지급액, 계좌번호
  - 제공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 성과 평가기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2026년 소상공인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부정수급 관련 약속서

- 아래 약속인은 “2026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약속인 : (서명 또는 인)

## 서식4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휴게시간 :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5. 근무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 임금  
- 시간(일, 주, 월)급 : \_\_\_\_\_ 원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 년       월       일

(사업주) 업 체 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급 여 명 세 서

지급일 : 2026-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첨부1

##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접술 및 유사서비스업 (접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첨부2****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 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소상공인 지원관련 지원제외 업종 세부 분류

분류 번호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지원 업종	분류 번호	86. 보건업 (지원제외 업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	병원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1	종합 병원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6102	일반 병원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6103	치과 병원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4	한방 병원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5	요양 병원
87122	정신질환, 정인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	의원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1	일반 의원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2	치과 의원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3	한의원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69	기타 보건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690	기타 보건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2	유사 의료업(침술원, 척추지압요법치료 등)		

분류 번호	64. 금융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65. 보험 및 연금업 (지원 제외 업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51	보험업
6411	중앙은행	6511	생명 보험업
64110	중앙은행	65110	생명 보험업
6412	일반은행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4121	국내은행	65121	손해 보험업
64122	외국은행	65122	보증 보험업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4131	신용조합	65131	건강 보험업
64132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	재 보험업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	재 보험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0	재 보험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49	기타 금융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491	여신금융업	65301	개인 공제업
64911	금융리스업	65302	사업 공제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5303	연금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64991	기금 운영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4992	지주회사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8223	부동산 감정평가업

분류 번호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71. 전문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71101	변호사업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71102	변리사업
66121	증권 중개업	71103	법무사업
66122	선물 중개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9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71201	공인회계사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02	세무사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8. 부동산업 (지원제외 업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